

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42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:2003. 2.26
제출자:김영해의원외 6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03년 3월 7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7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계 획

1. 활동 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 안건

-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3. 활동 기간

- 2003년 3월 7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이만재의원, 차재천의원, 고응종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심재국의원, 김영해의원

5. 운영 계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 고
3. 7(금)	제1차조례 (13:30)	1.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.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.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.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.평창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	